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와 문화적 권리*

우석균(서울대 언어교육원)**

- I. 서론
- II. 제3세대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 III.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와 문화적 권리
- IV. 결론

I. 서론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Group)은 1992년 「창립선언문」(“Founding Statement”)을 발표하고¹⁾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그룹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권위주의체제의 해체, 공산주의의 소멸과 이에 따른 혁명기획들의 퇴조, 민주화, 대중매체 및 초국가적 경제질서가 야기한 새로운 역학관계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Suk-Kyun Woo(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wsk65@snu.ac.kr), “Estudios subalternos latinoamericanos y los derechos culturales”.

1) 창립선언문은 다음 서지에 실려 있다: *Boundary 2*, Vol. 20, No. 3, 1993, pp. 110-121; John Beverley, José Oviedo and Michael Aronna(eds.), *The Postmodernism Debate in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5, pp. 135-146; *Dispositivo*, No. 46, 1996, pp. 1-11.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 가스뜨로-고메스가 번역하여 “Manifiesto inaugural”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문헌에 실려 있다: Santiago Castro-Gómez and Eduardo Mendieta (coordinadores),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éxico, D.F.: University of San Francisco and Editorial Miguel Ángel Porrúa, 1998, pp. 85-100.

때문에 새로운 사유방식과 새로운 정치적 행동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하(Ranjit Guha)가 주도한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를 새로운 분석틀로 도입하여 근대화, 독재, 정당, 혁명, 메트로폴리스/주변부, 발전, 민족주의, 민족해방이라는 과거의 의제 대신 합의, 다원주의, 민주주의, 하위주체성, 권력이동, 새로운 세계질서, 광범위한 지역(grand area)을 의제로 삼았다. 하위주체연구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라틴아메리카의 지배엘리트가 하층민들을 이해하고 대변하고 재현하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배엘리트들은 하층민을 국민이나 민족 혹은 민중 등의 범주 중 하나로 환원시키는 단순화의 오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도구로 동원해 왔다는 것이 하위주체연구의 시각이다. 부르주아 엘리트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하위주체 연구그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위주체연구는 국가, 민족, 인종, 계급, 젠더 등 여러 범주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지배와 종속의 복잡하고 다중적인 권력 관계들을 천착하기 위해 하위주체(subaltern)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자율성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이며, 이들의 진면목을 이해하려면 기존 자료에 대한 결을 거스르는(in reverse) 독해 및 이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의 주요 인물인 존 베벌리의 회고에 따르면 초창기의 하위주체 연구그룹은 그의 동료 유디스(George Yúdice)가 ‘하위주체연구의 하위그룹’이라고 칭할 정도로 학계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2년부터 여섯 차례의 학술모임을 가지면서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학제간 연구를 선도하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하위주체연구는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 방법론, 해체주의, 다양한 포스트 이론 등을 가로지르며 국가 및 계급과 하위주체의 관계, 엘리트와 하위주체, 하위주체성, 여성 하위주체, 종족, 재현과 대표성, 헤게모니와 지배, 차이와 인정, 통치가능성(governability), 시민권(citizenship), 식민주의와 하위주체, 문화와 문화정치, 다문화주의, 신사회운동 등에 대한 풍성한 논의를 산출하면서

학계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했다. 1998년 듀크 대학 모임 때에 구하를 비롯하여 라클라우, 엔리께 두셀, 아니발 끼하노, 차그라바르티 등이 참석한 일과, 2000년 11월에 스피박의 주도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근동의 하위주체연구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 국제학술대회 ‘확대하위주체연구’(Subaltern Studies at Large)가 개최된 일은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컬럼비아 대학에서의 학술대회 이후 라틴아메리카 연구그룹은 모임을 중단했다. 존 베벌리는 하위주체연구가 수행되는 동안 도출된 내부적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고 또 하위주체연구가 관심을 끌면서 그룹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의제들이 대두되면서 원래부터도 느슨한 성격의 모임이었던 연구그룹의 동질성에 집착할 필요성이 없어서 모임이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고 말한다.²⁾

비록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룹의 해체는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준다. 만일 그렇다면 이 그룹이 과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국가, 부르주아 엘리트, 좌파 엘리트를 비판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소수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천착하였다는 기존의 평가를 넘어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의 기원, 쟁점, 의의 등에 대해서는 줄고(2005)와 이성훈(2003)을 참조하기 바람. 존 베벌리의 견해들은 2005년의 메일 인터뷰의 답신 내용이다.

II. 제3세대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점은 현대 인권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1948)이 이미 인정한 것이다. 가령, 22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27조에서는 간단하게나마 문화적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적 권리는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1995년에도 필리벡(G. Filibek)은 문화적 권리를 ‘인권가족의 신데렐라’로 비유하였다.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치여 살듯이 문화적 권리 역시 다른 인권에 치여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재인용, 강내희 2000, 582). 하지만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유네스코가 1991년에 문화적 권리를 시대에 맞게 새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여 1997년에는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 초안을 마련하였고, 2001년에는 이에 의거하여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문건은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선언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이동연 외 2004, 158). 즉, 문화적 권리의 바이블이 탄생한 셈이다. 유네스코는 이어 이 선언을 국제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문화다양성협약」을 마련하였고,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인권도 하나의 제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문화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논의하고 보장할 기틀이 확고히 마련된 셈이다.

문화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제도화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보장되었던 문화적 권리가 제도화되기까지 어째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1990년대부터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은 무엇일까?, 문화적 권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과연 높은 수준의 실천이 가능할까? 등등이다.

1990년대 이전에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또 논

의도 부진했던 것에 대해 강내희는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냉전체제이다. 동서 양 진영이 체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문화적 권리는 경제적·정치적 이슈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정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니 문화적 권리란 개념도 따라서 모호해질 수밖에 없고, 이처럼 명료성이 떨어지는 개념으로는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강내희 2000, 583).

그러나 문화적 권리가 오랫동안 소외된 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선 근대적 인권 패러다임으로는 문화적 권리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령, 「세계인권선언」 27조나,³⁾ 1966년 결의되고 1976년에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국제사회권규약」)에는⁴⁾ 오늘날 문화적 권리를 논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인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문화의 정의 중 하나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가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정의가 너무나 다양해서 모든 정의를 포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이미 낭만주의 시대에 형성되었으며(Bennet et al. 2005, 65-66), 오랫동안 인류학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왔고,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 문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근대적 인권 패러다임 때문이었다. 흔히 인권에 대해서 논할 때 천부인권론 등을 언급하며 인권이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준거기준임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효제의 지적처럼(미셸린 이샤이 2005 옮긴이 서

3)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1)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3)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문, 8) 인권 역시 다른 모든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대와 경험의 산물일 뿐이다. 「세계인권선언」 자체가 ‘근대’라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7세기 영국 정치사상에서 비롯되어 18세기의 미국 독립 및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이론적 틀이 다져진 자유주의 전통, 즉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이른바 근대적 인간관을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이봉철 2001, 131). 그런데 이 자유주의 전통은 개인의 인권만 보장하면 민족적 권리나 종족적 권리 같은 집단의 권리는 자연히 보장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Kymlicka 1996, 15).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소수민족의 권리를 담아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M. 글렌 존슨 1995, 71-72).⁵⁾

근대적 인권 패러다임이 지닌 한계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근대라는 시대 자체의 속성이다. 근대는 중세의 초인간적 질서나 신분제를 넘어 인본주의적 전통을 정립했고, 모든 무지와 미신과 구습 타파에 크게 기여한 계몽주의를 낳았고, 자유주의 사상을 통해 절대권력에 맞섰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탄생했지만, 국가가 근대의 시대적 이상의 수호자 자격으로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 총체성과 동일성을 강요할 때 근대적 이념은 국가주의에 간혀버리는 결과를 낳았다(이봉철 2001, 290-291). 국가지상주의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자유주의 인권마저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이미 19세기부터 제기되었다. 가령,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야기한 총체적 비인간화가 근대국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이봉철 2001, 215).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은 오히려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더욱 강화시켜버렸을 뿐이다. 그래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에서도 진작부터 국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1968년 유네스코는 파리에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는 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문화적 획일성과 유사성을 강요하는 것이 문화적

5) 「세계인권선언」의 근대적 인권관에 대해서는 졸고(2007, 138-139)에서 다룬 바 있음.

권리 신장에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부터야 활발해질 수 있었다. 이념 대립이 야기한 국가주의의 폐해를 뒤돌아보고, 나아가 국가주의를 낳은 근대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가 근대를 넘어서려는 지점, 즉 탈근대적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동되기 시작한 지점에서 인권 논의의 중심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절대주의적 왕권에 맞서 제1세대 인권 개념인 자유권이 탄생하고,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에 반발하여 제2세대 인권 개념인 사회권이 탄생하였다면, 근대를 넘어서는 탈근대적 가치가 화두가 된 시대에 인권 논의의 중심에 진입된 문화적 권리는 제3세대 인권 개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원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이동연 외 2004, 165). 이 두 원칙을 일단 거칠게나마 구분하자면 문화다양성은 문화간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탈중심화된 다원주의라는 탈근대적 가치를 지향한다. 또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 역시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탈근대적 가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간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권리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광범위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차이보다는 문화간 교류에 역점을 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최고의 가치로 천명했지만, 최초의 이론적 바탕은 탈중심화된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였다(정갑영 외 2004, 13).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문화민주주의가 문화적 권리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문화적 권리가 근대국가의 국가중심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이 자율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바지하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도 민주주의 원칙이 작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에 관해서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수는 없다. 먼저 실천의 문제가 뒤따른다. 「문화다양성협약」은 각국의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가령, 우리나라도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 신장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연대에 의뢰하여 문화적 권리에 대한 기초 현황을 조사하고, 시민사회의 주도로 2004년 출범한 문화헌장제정위원회(위원장: 도정일)가 2006년 5월 21일 「문화헌장」을 공표했을 뿐이다. 아직 법 제정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 문화적 권리가 근대를 뛰어넘는 탈근대적인 인권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앞서 지적했지만, 사실 근대는 물론 탈근대적인 가치가 부상한 최근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문화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1968년의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은 국가지상주의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소비사회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였고, 「문화다양성협약」은 WTO체제나 문화산업과의 마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제적 논리가 문화적 권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탈근대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 시대가 사실은 아직도 근대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경제 논리가 더욱 더 위세를 부리고 있고, 실제로 문화 분야에서는 초국가적인 문화자본이 문화의 종 다양성을 위협하고 독점을 통해 문화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화적 권리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논리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문화적 권리가 탈근대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제3세대 인권 개념이라는 주장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발전을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으로 나누고, 좁은 의미의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의 발전을 진정한 발전의 척도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유네스코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1997)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강내희 2000, 594). 이는 문화와 경제가 별도의 영역이라는 관념이나 하부구조가 문화를 결정짓는다는 경제결정론을 파기하자는 제안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문화적 발전이 경제적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경제논리가 문화적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에서 탈피할 수 없음을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포된 「문화헌장」은 전문에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이나 「문화다양성협약」보다 한 단계 나아간 주장을 담고 있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게 하며, 시민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할 때, 문화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의 함수 관계를 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가로지르는 최종심급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행위나 정치 행위 자체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 재조직화”(심광현 2003, 10)하자는 문화사회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구현과 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동일시하는 이런 시각은 문화권을 자유권이나 사회권의 보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의 인권으로 보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문화적 권리가 단지 문화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주장은 문화권 논의에서는 이제 그다지 생소한 것이 아니다.⁶⁾

끝으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은 일종의 문화환원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문화사회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권리 신장과 수호는 절실하다. 현재의 문화정세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경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 노명우(2006, 222-223)는 문화적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은 물론 환경권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말한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위력이 날로 커지면서 대중문화는 일상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고, 1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든 현재의 문화정세에서 문화적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호하는 일은 문화의 흥수가 야기할지도 모를 혼란을 방지하는 일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특히 문화산업이 소수문화의 생존을 위협하고 획일적인 문화를 강요하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문화적 권리는 더 이상 잠시 뒷전에 두어도 되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커다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III.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와 문화적 권리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는 근대의 억압성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지점에서 문화적 권리와 조우한다. 또한 하위주체연구는 자율 가치와 타자 가치가 존중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의 개념을 초국가적인 문화산업의 팽창에 대해 우려하면서 문화연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문화적 권리 요구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위주체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아무래도 역사적·사회적으로 소외된 하위주체라는 범주를 부각시킨 것일 텐데, 이는 재현의 민주화, 즉 엘리트가 하위주체를 대변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주체가 스스로를 대변하고 재현하게 하는 문화의 민주화 가능성을 천착한 것이다.

III.1. 하위주체 국제연대의 모색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는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억압성을 비판한다. 물론 국가에 대한 비판은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이전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건설을 주도한 크리올들은 피지배층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들만의 상상의 공동체를 발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내부 식민체제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통합하려는 본격적인 국민국가 건설이 시작되었다지만 국가지상주의라는 근대 국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가령,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경제발전위원회(CEPAL)가 라틴아메리카 발전전략으로 근대화론을 채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종, 종족, 계급, 젠더의 차이가 무시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질적인 국민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경제적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출현하였고, 기존 좌파는 물론 지식인들도 국가의 억압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연구그룹의 주요 멤버들도 좌파에서 진화되어 온 만큼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 국면에서도 국가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졌다. 한꺼번에 분출된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미증유의 경제위기, 이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신자유주의 모델이 가져온 파장 등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각 계층과 계급을 조정하고 중재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Sarto 2004, 160).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연구그룹은 또한 기존 좌파의 기획도 종족이나 여성 등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고 권력 획득만을 추구한 일종의 좌파 국가주의였을 뿐이라는 반성적인 비판을 하였다(Rodríguez 2001, 2-3). 가령 1967년 체 게바라의 죽음은 연구그룹에게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체 게바라는 자기가 대변한다고 믿었던 볼리비아의 원주민 농민이 정작 혁명에 무관심하다고 한탄하는 일기를 남긴 바 있다(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Group 1995, 139). 이는 계급 개념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광범위한 하층민의 존재를 의미했고, 기존의 좌파기획의 불완전성을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는 국가지상주

의, 근대화, 발전, 계급투쟁 등에 소외되었던 소수집단들을 눈여겨보았다. 일견 연구대상을 미시화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연구지평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국경이 희미하게 된 세계화라는 현실이 특정 집단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령, 「창립선언문」은 라틴아메리카 연구도, 이주의 증가로 제1세계 안에 제3세계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말한다(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Group 1995, 143). 더 심각한 문제는 억압적인 근대국가를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신자유주의였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 축소가 하위주체 연구그룹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었지만, 그 빈틈을 초국가적 자본이 장악하게 된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위주체연구가 내놓은 처방은 하위주체들의 국제연대이다. 존 베벌리는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의 헤게모니 장악 기도를 저지하는 데 유효한 것은 하위주체의 국제적인 연대라고 말한다(Beverly 2003, 55-57). 이는 『제국』에서 내린 처방과 유사하다. 제국주의 시대처럼 제국주의의 외부와 내부가 존재하지 않고 전지구화된 하나의 제국만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국제적인 연대에 입각한 내부의 대항제국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네그리와 하트의 견해이다(마이클 하트/안토니오 네그리 2001, 275-293).⁷⁾

7) 마이클 하트는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가 과거 식민시대의 피식민 주체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는 데 적합할지 몰라도 탈식민 시대의 역사적인 변화나 제국을 만든 새로운 형태의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택현 2003, 63).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연구그룹 멤버인 호세 라바사는 사빠띠스마 봉기를 『제국』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있다(Rabasa 2004). 따라서 하위주체연구와 『제국』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맥락의 것만은 아니다. 물론 대항의 주체로 하위주체연구는 하위주체를, 『제국』은 다중(multitude)을 설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위주체가 “전지구적인 제국적 질서 안에 공통적으로 착취당하는 다중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다중의 활력, 욕망,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있는 무엇”이라는 지적은(김정하 2006, 7) 양자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실 하위주체연구의 커다란 딜레마중 하나는 하위주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문제였다. 심지어 일레아나 로드리게스는 하위주체의 실체가 과연 진짜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하층민을 비유하는 메타포인지 자문하기도 할 정도였으니(Rodríguez 2001a, 14), 하위주체의 미결정성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이 하위주체연구의 결점이라기보다는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는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하위주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근대국가의 억압성을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던 정세 속에서 탄생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의 가능성을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세와 같은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방향성을 모색했던 것이다. 하위주체 연구그룹이 대단히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려 했던 것도 그래서이다.

III.2. 문화연구로서의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아브릴 프리고는 하위주체연구가 해체론적 담론분석, 탈식민주의, 초국가적 문화연구 등과 더불어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Trigo 2004, 348).⁸⁾ 그렇다 해도 라틴아메리카 내부에서도 1980년대부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었다. 1980년대의 미증유의 위기로 발전론이나 종속이론 등의 기존의 경제 분석들은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고, 각각 국가안보와 혁명을 내세워 극심한 이념 대립을 일삼았던 우파와 좌파 모두 경제위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화에 눈을 돌린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분석들이 찾지 못한 라틴아메리카의 난맥상에 대한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특히 신사회운동의 확산 및 미디어를

체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은 「창립선언문」 발표 이전부터 1980년대 미국의 다문화주의 논쟁과 라틴아메리카 증언서사(testimonio)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하위주체의 국제적 연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지만 이 연구그룹이 당면한 우선적인 과제는 국가, 민족, 계급 등의 거대담론의 화두들을 해체하는 데 있었다. 전지구화된 제국에서 구체적인 대항 담론과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해체 이후에 부상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8) 프리고는 이 시기에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중심이 첫째, 학술시장(academic market)이 세계화되고, 둘째,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팽창하고, 셋째, 미국식 지역연구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척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으로 옮겨져 왔다고 말한다(Trigo 2004, 347).

비롯한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전지구적으로 증대된 현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Sarto 2004, 160). 1970년대의 암울한 독재 시대에 해방신학이 처음 선도한 중앙아메리카의 풀뿌리민주주의 운동은 신사회운동으로 발전하여 1980년대에 더욱 활성화되었다. 민주화 국면에서 터져 나온 원주민 인권이나 여성 인권 등을 의제로 삼으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모색하였고,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로 해체된 사회안전망을 재조직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사회운동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 미디어와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문화적 경험이 일상의 일이 되어버린 현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위주체연구도 이런 동향에 동참하여 「창립선언문」 서두에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문화적 영역을 재정의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천명했다(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Group 1995, 135). 문화연구로서의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는 크게 보아 가르시아 캄플리니 식의 잡종 문화론과 미국식 다문화주의를 경계했다. 하위주체 연구그룹은 잡종 문화론이 근본적으로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질적인 문화를 잡종 문화라는 하나의 범주로 동질화시키려는 시도는 무엇이든 체계화하려는 지식인 엘리트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Rodríguez 1998, 104-105). 또한 하위주체 연구그룹이 보기에 잡종 문화론은 여러 문화가 뒤섞인 현상을 서술할 뿐 문화적 헤게모니 문제나 문화적 차이가 지배-종속 구조와 맞물려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종족, 언어, 문화가 존재하는 라틴아메리카 현실에서, 또 대부분의 경우 원주민이 곧 하위주체인 현실에서 잡종 문화론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이 미국식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였다(Rodríguez 2001b, 5-6). 미국식 다문화주의 논의가 문화간 차이에 대한 현상적 논의에 그치거나 차이의 인정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원주민 하위주체 문제의 탈정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위주체연구의 이런 인식은 잡종 문화론은 차이를 무화시키고 다문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침범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과 퀘를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의 정치성을 고수하는 것은 문화를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 즉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의 투쟁의 장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는 문화를 소비재로 인식하는 신자유주의적 문화 관점에 맞서 문화의 공공성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태도로 베벌리는 이를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Beberley 2004).

하위주체연구가 문화적 권리와 좀 더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점은 아마도 잡종 문화론이나 미국식 다문화주의 대신 신사회운동을 높이 평가한 점일 것이다. 이는 연구그룹의 몇몇 멤버들의 삶의 역정과 무관하지 않다. 존 베벌리, 일레아나 로드리게스, 로버트 카, 마이클 클라크 등은 산디니스타 정권이나 기타 중앙아메리카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다(Rodríguez 2001b, 1-2). 주지하다시피 신사회운동은 정권 획득이나 체제에 대한 저항에 주력한 과거의 사회운동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계급, 민족, 국민 등의 범주를 특권화시키기보다는 주변화된 타자 가치를 복원시키고, 소수집단이 자율적인 삶의 공간을 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삶의 공간이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추구했다. 이런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탈근대적인 인권 운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봉철 2001, 348-349).

신사회운동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지지는 이 그룹이 문화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앞서의 진술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고찰해볼 필요를 제기한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감을 준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의 기원이 그람시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라는 관점을 취하지 않고서는 신사회운동의 주역인 다원적인 주체들의 존립 기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라는 언뜻 보아서는 양립시키기 힘든 두 가

지 관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는 신사회운동을 이끄는 새로운 행위자(agency)를 지배층과 교섭하는 일종의 유기적 지식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삶의 방식, 즉 문화가 교섭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의 정치적 억압, 1980년대의 경제위기,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헤치고 나온 라틴아메리카 신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방식을 관찰시키는 일은 문화적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대응 논리와 방안을 찾는 문화적 권리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III.3. 재현의 민주화와 문화적 권리

하위주체연구가 문화적 권리 증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아무래도 재현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구하는 식민주의 역사학이든 민족주의 역사학이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든지간에 엘리트주의적 역사 서술은 하위주체를 왜곡 재현하였다고 주장한다(김택현 2003, 97-98). 지배엘리트가 재현을 독점하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역시 이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주 공격대상이 문학 텍스트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엘리트들이 썼고 국민국가의 토대를 이루는 상상력을 제공했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

그런데 재현의 문제는 사실 하위주체연구 이전부터 존재했다. 가령, 앙헬 라마는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대표성(representatividad)에 대한 열망을 꼽는다(Rama 1987, 13). 그가 말하는 대표성을 지닌 문학이란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문학이다. 그리고 프리오요보다는 메스띠소나 중산층 문인들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대표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다(Rama 1987, 16). 라마의 이러한 관점은 물론 하위주체 연구 그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현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상류층 백인이 독점하던 재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좀 더 다수인 메스띠

소와 중산층 문인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증언서사 『도망친 노예의 일생』(*Biografía de un cimarrón*, 1966)의 발간은 재현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는 한층 더 진전된 것이었다. 이 텍스트는 미겔 바르넷(Miguel Barnet)이 노예 출신 흑인이 구술한 이야기를 녹취, 정리, 편집한 것이다. 소설가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서사 텍스트를 발간한 이유를 살펴보면 바르넷이 하위주체연구의 관심사를 일정부분 선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존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한계가 소설가의 발화위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하나의 계층, 심지어 하나의 계급이라고도 할 수 있을 엘리트들이 주로 소설의 생산자인 현실에서 인디오나 흑인이 처한 현실을 재현하는 데는 크나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Barnet 1986, 285). 그래서 그는 에스페반 몬떼호라는 105세의 노인을 정보 제공자로 삼아 하층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바르넷이 근대라는 시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바르넷이 몬떼호를 정보 제공자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노예에서 도망친 노예로, 도망친 노예에서 일용노동자로 신분이 변화하고, 또 식민 지배를 치절하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전쟁도 참여하는 등 쿠바의 중요한 사회변동을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 쿠바 현실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Barnet 1986, 286-288). 이처럼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국가를 비판한 하위주체연구의 관점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게다가 바르넷 스스로는 『도망친 노예의 일생』을 증언서사가 아니라 증언소설이라고 규정한다. 소설가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소설가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르넷의 태도는 그가 지배 엘리트의 관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르넷과는 달리 하위주체연구는 지식인 엘리트가 아닌 하위주체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을 모색했다. 물론 스피박이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1988)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중, 삼중의 억압기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하위주체가 스스로 발화하는 것은 대

단히 힘든 일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정전처럼 여기는 『나의 이름은 텐추』도 지식인 엘리트(엘리사베스 부르고스)가 편집자로 개입한 만큼 완전히 순수한 하위주체 텍스트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재현에 있어서 엘리트의 특권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는 점만 해도 재현의 민주화 측면에서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현의 민주화야말로 문화적 권리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권규약」의 정의나⁹⁾ 앞서 인용한 「세계인권선언」 27조에서는 문화참여권, 문화향유권, 저작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대체로 문화의 유통이나 소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의 생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물론 창작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등 문화의 생산과 관련된 사안들은 각종 인권 관련 규약이나 선언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권리가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문화의 생산보다는 자유권, 즉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생산에 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피박은 재현(representation)을 대표(Vertretung)와 묘사(Darstellung)로 구분하였다(Spivak 1988, 277). 이런 구분을 통해 그녀는 국가가 하위주체를 대표하거나 지식인이 하위주체를 묘사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임을 주장하였다. 스피박의 분석을 확대해석하자면 대표 없는 묘사나 묘사 없는 대표로는 진정한 재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오늘날의 추세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성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방향전환이 깊숙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묘사 역시 참여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묘사할 수 있을 여건이 조성되기를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의 목록에 소비에 관한

9) 1)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3)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야기만 있어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적 권리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동연 외 2004, 335)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의 연구 업적을 돌아보면 수용하기 힘든 점들도 있다. 가령, 미국식 다문화주의의 탈 정치성을 경계했다고는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도 다문화주의의 가능성을 천착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다양성협약」(줄고 2007, 140-141)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o)라는 개념을 내세워 문화간 차이에 대한 존중보다는 문화간 교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하위주체연구의 신랄한 비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억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을 위한 제도들을 수립할 수 있을 역량을 국가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미셸린 이샤이 2005, 562).

이러한 몇 가지 유보조향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문화적 권리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대의 거대담론들을 공격하면서 정치와 경제를 문화적으로 재구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초국가적인 문화산업에 맞서 문화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소수집단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의 종 다양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재현의 민주화를 통해 하위주체가 문화의 생산수단을 소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 등이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하위주체연구가 남긴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가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요구가 분출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1990년대에 태동하였다는 점 때문에 양자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것은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 그룹이 문화적 권리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은 것 같지는 않다. 좌파 일색이었던 연구그룹 초창기 멤버들의 특이한 전력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지니고 있던 낙관론적 전망은 칠레 아옌데 정권의 실각과 함께 퇴색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의 성공이 좌파를 잠시 고무시켰지만 1980년대의 경제위기에 따른 책임론 공방,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1990년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에서 산디니스타의 패배 등은 좌파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초창기 멤버들은 이러한 고뇌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민중 대신 하위주체를, 정치경제적 화두 대신 문화적 화두를 선택하면서 좌파의 좌초라는 당혹스런 현실 속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갈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마르크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진단이 최근 간간히 흘러나오고, 우리나라의 문화과학자들은 문화적 권리가 계급투쟁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문화적 권리를 계급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이동연 2005) 작금의 상황이다. 아마도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초창기 멤버들이 문화적 권리 논의를 통해 원했던 것도 마르크스의 부활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었을지도 모른다.

Abstract

El Grupo Latinoamericano de Estudios Subalternos publicó “Manifiesto inaugural” en 1992 y hizo intensas actividades e investigaciones a lo largo de la década del 90. La contribución académica del Grupo es enorme aunque también había muchas críticas. Creo que uno de los mayores logros del Grupo consiste en dar unas sugerencias ricas al debate en cuanto a los derechos culturales. A partir de esta hipótesis, este artículo intenta detectar lugares convergentes entre los estudios

subalternos latinoamericanos y los derechos culturales.

Key Words: América Latina, Derechos humanos, Derechos culturales, Estudios subalternos / 라틴아메리카, 인권, 문화적 권리, 하위주체연구

논문투고일자: 2007. 05. 01

심사완료일자: 2007. 05. 18

게재확정일자: 2007. 05. 23

참고문헌

- 강내희(2000),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in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 제1권, 한길사, pp. 582-603.
- 김정하(2006), 「누구를 위한 다중인가 -서발턴과 다중의 조건들」, 자율평론 15호, http://jayul.net/view_article.php?a_no=878&p_no=1
- 김택현(2003),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 노명우(2006), 「‘문화헌장’ 제정과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과학 여름호, No. 46, pp. 220-236.
- 마이클 하트/안토니오 네그리(2001), 『제국』, (윤수종 역), 이학사.
- 미셸린 이샤이(2005),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도서출판 길.
- 심광현(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 이동연(2005), 「한국 문화권의 사회적 실천과 문화운동의 미래」, 제2회 맑스 코뮌날레 학술문화제 발표문 요약, <http://www.communale.net/bbs/zboard.php?id=data>.
- 이동연 외(200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 이성훈(2003),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의 성과와 한계」,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16, No. 2, pp. 491-503.
- 정갑영 외(200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보고서.
- 우석균(2005),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의 기원, 쟁점, 의의」, 실천문학 여름호, No. 78, pp. 320-343.
- _____ (2007), 「‘내 안의 다양한 우리’ -페루 안데스와 인권」,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1, pp. 135-162.
- M. 글렌 존슨(199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in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

- 사』, 으뜸, pp. 23-90.
- Barnet, Miguel(1986), “La novela testimonio. Socio-literatura”, in René Jara and Hernán Vidal(eds.), *Testimonio y literatura*, Minneapolis: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pp. 280-302.
- Bennett, Tony et al.(2005), *New Keywords: A revised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Beverley, John(2003), “Adiós: A National Allegory(Some Reflections on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in Stephen Hart and Richard Young(eds.),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pp. 48-60.
- _____ (2004), *Subalternity and Representation: Arguments in Cultural Theory*, second printing,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메일 인터뷰, 04-28.
- Burgos, Elizabeth(2003), *Me llamo Rigoberta Menchú y así me nació la conciencia*, 18th ed., México, D.F.: Siglo XXI.
- Kymlicka, Will(1996), *Ciudadanía multicultural*, Barcelona: Paidós.
-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Group(1995), “Founding Statement”, in John Beverley, José Oviedo and Michael Aronna(eds.), *The Postmodernism Debate in Latin Americ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35-146.
- Rabasa, José(2004), “Of Zapatismo: Reflections on the Folkloric and the Impossible in a Subaltern Insurrection”, in Ana del Sarto et al.(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561-583.
- Rama, Ángel(1987),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 3rd ed., México D.F.: Siglo XXI.
- Rodríguez, Ileana(1998), “Hegemonía y dominio: subalternidad, un significado flotante”, Santiago Castro-Gómez and Eduardo

Mendieta(coordinadores), *Teorías sin disciplina, latinoamericanismo, poscolonialidad y globalización en debate*, México, D.F.: University of San Francisco/Miguel Ángel Porrúa, pp. 101-120.

_____ (2001a), “La encrucijada de los Estudios Subalternos: postmarxismo, desconstruccionismo, postcolonialismo y multiculturalismo”, in Ileana Rodríguez(ed.), *Convergencia de tiempos: Estudios Subalternos/contextos latinoamericanos estado, cultura, subalternidad*, Amsterdam and Atlanta, GA: Rodopi, pp. 5-47.

_____ (2001b), “Reading Subalterns Across Texts, Disciplines, and Theories: From Representation to Recognition”, in Ileana Rodríguez(ed.), *The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Reade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32.

Sarto, Ana del(2004), “Introduction” to Chapter II “Foundations”, in Ana del Sarto et al.(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53-181.

Spivak, Gayatri Chakravorty(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271-313.

Trigo, Abril(2004), “Introduction” to Chapter III “Practices” , in Ana del Sarto et al.(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47-373.